

1. 제정이유

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(地中)에 저장하거나 산업적·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4. 2. 6, 법률 제20203호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방법(안 제2조)

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함

나. 인증표시의 홍보(안 제3조)

1) 인증사업자는 사업장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때에 평가기관과 인증일자를 포함해야 함

2) 인증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방법)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조(인증표시의 홍보) 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자(이하 “인증사업자”라 한다)는 사업장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기관과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.

② 인증사업자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(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금지규정)를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